

##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금번 예산안은 2014. 4.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4.22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임.

### I. 제안이유

연도중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자체사업, 법정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 II. 주요골자

**가.**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0,45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37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770백만원이 증액된 293,662백만원  
특별회계는 14,602백만원이 증액되어 66,794백만원 임.

### 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397백만원, 지방교부세 30,53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270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65백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455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97백만원 임.

###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35,511백만원(예비비 3,464백만원 포함),재무  
활동 6,19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3,914백만원, 재무활동 688백만원 임.

### Ⅲ. 검토내용

#### 1. 총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		증감액	%
합계	360,456,233	100	304,084,389	56,371,844	18.54
일반회계	293,662,318	81.47	251,891,963	41,770,355	16.58
상수도공기업	25,336,643	7.03	18,909,918	6,426,725	33.99
소계	41,457,272	11.5	33,282,508	8,174,764	24.56
주택사업	30,000	0.01	12,000	18,000	150.00
기반시설부담금	99,000	0.03	99,000	0	0.00
의료보호기금	703,001	0.20	703,001	0	0.00
발전소주변지역	45,071	0.01	45,071	0	0.00
수질개선	38,145,184	10.57	29,988,420	8,156,764	27.20
공유재산관리	820,000	0.23	820,000	0	0.00
농공단지조성	1,615,016	0.45	1,615,016	0	0.00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 총 360,456,233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8.54%인 56,371,844천원이 증액되었고,
- 이 중 일반회계는 293,662,318천원으로 41,770,355천원(16.58%)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66,793,915천원으로 14,601,489천원(27.98%)이 증액되었음.
- 전체회계별 예산규모 면에서는 일반회계가 81.47%, 특별회계는 18.53%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2. 일반회계

###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 초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293,662,318	100	251,891,963	41,770,355	16.58
자 체 수 입	지 방 세	22,554,996	7.68	22,554,996	0	0.00
	세외수입	7,152,767	2.45	6,756,067	396,700	0
	소 계	29,707,763	10.13	29,311,063	396,700	0
의 존 수 입	지방교부세	171,828,916	58.51	141,291,282	30,537,634	21.61
	재정보전금	5,000,000	1.70	5,000,000	0	0.00
	국도비보조금	76,510,045	26.05	72,239,618	4,270,427	5.91
	보전수입등내부 거래	10,615,594	3.61	4,050,000	6,565,594	18.05
	소 계	263,954,555	89.87	222,580,900	41,373,655	45.57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93,662,31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58%인 41,770,355천원이 증가하였고,
  - 자체수입은 29,707,763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세외수입이 396,7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의존수입은 263,954,555천원으로 지방교부세 171,828,916천원, 재정보전금 5,00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76,510,045천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615,594천원이 편성되었음.

○ 이를 세목별로 보면

① 지방세수입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보 통 세	22,104,996	7.53	22,104,996	0	0
목 적 세	-	-	-	-	-
과년도수입	450,000	0.15	450,000	0	0
합 계	22,554,996	7.68	22,554,996	0	0

○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없음.

② 세외수입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7,152,767	2.44	6,756,067	396,700	5.87	
경상적 세외 수입	재산임대수입	718,433	0.24	718,433	0	0
	사용료수입	727,600	0.25	727,600	0	0
	수수료수입	774,706	0.26	774,706	0	0
	사업수입	2,015,000	0.69	2,015,000	0	0
	징수교부금수입	920,458	0.31	920,458	0	0
	이자수입	620,000	0.21	620,000	0	0
	소 계	5,776,197	1.97	5,776,197	0	0
임시적 세외 수입	부담금	558,700	0.19	162,000	396,700	244.88
	기타수입	567,870	0.19	567,870	0	0
	지난년도수입	250,000	0.09	250,000	0	0
	소 계	1,376,570	0.47	979,870	396,700	40.48

- 자체수입에 24%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396,700천원이 증액된 7,152,767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396,700천원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음.

### ③ 지방교부세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 감액	%
계	171,828,916	100	141,291,282	30,537,634	21.61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총액은 당초예산대비 21.61%인 30,537,634천원이 증액된 171,828,916천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8.5%를 차지하고 있음.

### ④ 재정보전금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 감액	%
계	5,000,000	100	5,000,000	0	0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재정보전금의 총규모는 5,0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⑤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국고보조금	61,479,630	20.94	59,507,705	1,971,925	3.31
도비보조금	15,030,415	5.12	12,731,913	2,298,502	18.05
합 계	76,510,045	26.06	72,239,618	4,270,427	5.91

- 보조금 76,510,045천원은 당초예산대비 5.91%증액된 것으로
  - 이중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1,971,925천원이 증액된 61,479,630천원 이고,
  -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2,298,502천원이 증액된 15,030,415천원임.

⑥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 초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10,615,594	3.61	4,050,000	6,565,594	162.11	
보전 수입 등	잉 여 금	9,472,664	3.23	3,000,000	6,472,664	215.76
	전년도 이월금	92,930	0.03	0	92,930	순증
	용자금 원금수입	150,000	0.05	150,000	150,000	0.00
	소 계	9,715,594	3.31	7,200,000	13,281,188	208.43
내부 거래	예탁금 및 예수금	900,000	0.31	900,000	0	0.00
	소 계	900,000	0.31	900,000	0	0.00

-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6,565,594천원은 당초예산대비 162.11% 증액된 것으로
  - 이중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보전수입등은 6,565,594천원이 증액된 9,715,594천원 이고,
  - 내부거래는 900,000천원으로 변동이 없음.

## □ 세 출 예 산

### ①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정책사업비	231,242,044	78.75	195,730,879	35,511,165	18.14
재무활동비	18,668,027	6.35	12,477,533	6,190,494	49.61
행정운영경비	43,752,247	14.90	43,683,551	68,696	0.16
합 계	293,662,318	100	251,891,963	41,770,355	16.58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6.58%인 41,770,355천원이 증가한 293,662,318천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책사업비는 당초대비 18.14%인 35,511,165천원이 증액된 231,242,044천원이고,
  - 재무활동비는 당초대비 49.61%인 6,190,494천원이 증액된 18,668,027천원이며,
  - 행정운영경비는 당초대비 0.16%인 68,696천원이 증액된 43,752,247천원임.

## ② 기능별 구분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일반공공행정	18,119,880	6.17	16,613,169	1,506,711	9.07
공공질서및안전	10,792,675	3.68	10,831,097	-38,422	-0.35
교 육	2,884,478	0.98	2,511,246	373,232	14.86
문화및관광	36,277,503	12.35	26,999,539	9,277,964	34.36
환경보호	28,436,503	9.68	21,674,952	6,761,551	31.20
사회복지	43,101,584	14.68	39,074,403	4,027,181	10.31
보 건	4,066,420	1.38	3,494,905	571,515	16.35
농림해양수산	56,390,260	19.20	50,800,307	5,589,953	11.00
산업중소기업	2,749,649	0.94	1,968,573	781,076	39.68
수송및교통	13,022,457	4.43	7,428,653	5,593,804	75.30
국토및지역개발	30,603,923	10.42	23,346,829	7,257,094	31.08
예비비	3,464,739	1.18	3,464,739	0	0
기 타	43,752,247	14.90	43,683,551	68,696	0.16
합 계	293,662,318	99.99	251,891,963	41,770,355	16.58

###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당초대비 9.07%가 증액된 18,119,880천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대비 0.35%가 감액된 10,792,675천원
- 교육분야는 당초대비 14.86%가 증액된 2,884,478천원,
- 문화관광분야는 34.36%가 증액된 36,277,503천원이고,



- 환경보호분야는 당초대비 31.20%가 증액된 28,436,503천원이며,
- 사회복지분야는 당초대비 10.31%가 증액된 43,101,584천원임.
- 보건분야는 당초대비 16.35%가 증액된 4,066,420천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당초대비 11%가 증액된 56,390,260천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당초대비 39.68%가 증액된 2,749,649천원임.
  
- 수송및교통분야는 당초대비 75.30%가 증액된 13,022,457천원이며,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대비 31.08%가 증액된 30,603,923천원이고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 기타 각 부서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당초대비 0.16%가 증액된 43,752,247천원이 편성되었음.

### ③ 성질별 구분

(단위:천원)

구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 감액	%
인건비	38,715,028	13.18	37,866,758	848,720	2.24
물건비	23,377,555	7.96	22,043,619	1,333,936	6.05
경상이전	74,660,234	25.42	67,113,661	7,546,573	11.24
자본지출	139,633,466	47.55	111,360,759	28,272,707	25.39
보전재원	1,807,000	0.62	1,807,000	0	0
내부거래	11,879,246	4.05	8,235,427	3,643,819	44.25
예비비및기타	3,589,789	1.22	3,464,739	125,050	3.61
합계	293,662,318	100	251,891,963	41,770,805	16.58

○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당초대비 2.24% 증액된 38,715,028천원이고,
- 물건비는 당초대비 6.05% 증액된 23,377,555천원이며,
- 경상이전비는 74,660,234천원으로 당초대비11.24% 증액되었음.
  
- 자본지출은 당초대비 25.39% 증액된 139,633,466천원이고,
- 보전재원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44.25%증액된 11,879,246천원임.
-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대비 3.61% 증액된 3,589,789천원임.

### 3.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66,793,915	100	52,192,426	14,601,489	27.98	
상수도공기업	25,336,643	37.93	18,909,918	6,426,725	33.99	
기타 특별 회계	주택사업	30,000	0.04	12,000	18,000	150.00
	기반시설부담금	99,000	0.15	99,000	0	0.00
	의료보호기금	703,001	1.05	703,001	0	0.00
	발전소주변지역	45,071	0.07	45,071	0	0.00
	수질개선	38,145,184	57.11	29,988,420	8,156,764	27.20
	공유재산관리	820,000	1.23	820,000	0	0.00
	농공단지조성	1,615,016	2.42	1,615,016	0	0.00
	소 계	41,457,272	62.07	33,282,508	8,174,764	24.56

## □ 세입예산

-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6,793,915천원으로 당초대비 27.98%인 14,601,489천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대비 33.99%인 6,426,725천원이 증액된 25,336,643천원이고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대비 8,156,764천원 증액된 38,145,184천원이며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8,000천원이 증액된 30,000천원임
  -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

## □ 세출예산

-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규모와 마찬가지로 당초대비 27.98%인 14,601,489천원이 증액된 66,793,915천원으로 회계별로 주요세출을 살펴보면,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 상수도 배수관로확장공사 1,050,200천원
    -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5,000,000천원이며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74,000천원
    - 오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 600,000천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71,430천원
    - 면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4,206,000천원
    - 하안미(가평동)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500,000천원임

#### 4. 종합검토의견

-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60,45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04,084백만원보다 56,37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293,66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770백만원이
  - 특별회계는 66,79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0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 지방세와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397백만원이 증가한 7,153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30,538백만원이 증가한 171,829백만원임.
  - 국도비 보조금 등은 4,270백만원이 증가한 76,510백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566백만원이 증가한 10,616백만원임
  
  -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차액 29,125백만원, 특별교부세 1,100백만원 분권교부세 313백만원 등이며
  - 국도비 보조금 등은 사회복지보조 95백만원, 문화관광사업 226백만원, 농업보조사업 1,156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1,507백만원, 9%), 교육(373백만원, 15%), 사회복지(4,027백만원, 10%), 보건(572백만원, 16%), 농림해양수산(5,590백만원, 11%)분야 등은 20%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 문화 및 관광(9,278백만원, 34%), 환경보호(6,761백만원, 31%), 산업중소기업(781백만원, 40%), 수송 및 교통(5,594백만원, 75%), 국토 및 지역개발(7,257백만원 31%)등에서는 30%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음.

-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 주민생활지원과(3,159백만원, 8%), 종합민원과(76백만원, 6%), 재무과(148백만원, 6%), 농업기술센터(3,274백만원, 10%), 등은 10%내 소폭 증가한 반면,
- 문화관광과(5,372백만원, 27%), 경제체육과(5,086백만원, 59%), 환경과(4,048백만원, 24%), 안전건설과(8,000백만원, 28%) 도시주택과(7,506백만원, 50%), 상하수도사업소(2,822백만원 51%)등은 큰폭으로 증가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 8종의 특별회계중 총 규모는 당초예산 52,192백만원보다 14,601백만원(28%) 증액된 66,793백만원임.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확장 1,050백만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5,119백만원 등이며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74백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71백만원, 면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4,206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음.

###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순위조정은 국가 정책 기조변경이나 민생안정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며
- 당해 연도 투자는 당초예산에서 대부분 편성이 이루어지고 추경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 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법정 필수경비, 불가피한 자체사업비를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음.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순수 군비 사업을 포함하여 신규 사업이 다수 편성되었고 또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예산편성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산편성은 소규모 사업일 경우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예산을 편성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인 경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 편성이 이루어 져야하나, 일부 예산의 경우 법적인 절차와 과정 이 생략되고 사업계획서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선심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진 것을 일부 발견 할 수 있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가 지정사업인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 점을 판단할 때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들 인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보조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어떠한 사안을 즉흥적 행정을 통해 해결한다면 지방재정 건전성에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국·도비 유동성이 많을 것이 예상 되고 미부담된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준비부담을 고려할 때 준비재원을 2회 추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 하지 않은 부분이라 하겠음.

- 모든 예산편성은 예산서 부기를 세분화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포괄적으로 부기를 명기(※도시주택과 “시가지 주차공원사업”)하여 의회의 **의결권**보다는 **편성과 집행재량**에 무게를 두는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 예산의 수혜는 군민누구나 수혜의 범위에 포함되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는 준비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